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- 216호

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·상점가 R&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『**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·상점가 R&D 지원사업**』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21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지원개요

□ **(사업목적)** 전통시장·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□ **(지원대상)** 중소기업, 대학·연구기관

□ **(지원규모)** 총 40억 원, 2개 내외 과제 지원

□ **(지원내용)**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인프라 기술*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

* 공공 네트워크 기술,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기술, 인증/인가/비식별화 보안 기술 등

- 중소기업과 인프라 기술을 보유한 대학·연구기관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 및 수요 등을 분석하여,
- 운영/관리, 물류/유통, 편의/안전 분야 등 현장적용 가능한 「**종합 맞춤형 서비스**」 기획·개발 및 구축을 통해 실증·구현

□ **(지원조건)**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

구분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*	지원유형
스마트 전통시장·상점가 R&D 지원사업	최대 2년, 20억 원 (연차별 최대 10억 이내)	80% 이내	자유응모

* 코로나-19로 인한 중소기업 R&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1-92호, '21.12.28.)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% 이상→20%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2. 신청자격 등

□ **(신청 자격)** 반드시 주관(1개)+위탁(1개)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, 각 중소기업·대학·연구기관은 과제 1개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○ **(주관연구개발기관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**(위탁연구개발기관)** 인프라 기술 관련 노하우, 특허 등 연구역량을 갖추고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
◇ **대학**

◇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중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춘 대학

◇ **연구기관**

◇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개발법인으로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춘 연구기관

○ **(공통)** 스마트 전통시장·상점가의 **보급·확산을 위해** 과제신청 시 **시장·상점가 동의서를 필수 제출**해야하며, **지방비 지원 확약서**를 제출할 경우 **가점 부여**

① **(시장·상점가 동의서)** 스마트 전통시장·상점가 실증 모델이 될 전통시장·상점가 **상인회의 60% 이상 동의 필수**

- 연구개발 결과물이 해당 시장·상점가에 가장 먼저 시범도입*

될 수 있도록 하여, 협조에 따른 이점 제공

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**과제종료일로부터 1년간** 물적·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**사후운영·관리를 수행**해야하며, **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**(붙임1 참고)

② **(지자체 확약서)** 시장·상점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**일정 비율 이상**의 지방비를 지원한다는 **확약서 제출**(선택사항) **시 가점 부여**

* (가점)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5%(최대 5억) 이상: +5점
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5%(최대 3억) 이상: +3점

□ **(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)**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○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,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

*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
□ **(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)** [붙임1] 참고

3. 추진절차 및 평가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추진 표준절차

사업공고		신청·접수		사전검토		선정평가		지원과제 선정
중소벤처기업부	➡	주관연구개발기관 (온라인)	➡	전문기관	➡	전문기관	➡	중소벤처기업부 / 전문기관
'22년 3월		'22년 3월~5월		'22년 5월		'22년 5월~6월		'22년 6월

* (주관연구개발기관) 중소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□ 선정평가 방법

○ **대면평가**

- 기술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시장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, 스마트 전통시장이 적용될 **현장에서 대면평가** 실시

- 현장 점검,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,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한 후,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현장 대면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-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는 '추천과제' 또는 '후보과제(필요시)'로 분류되며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

○ **동점자 처리 기준**

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,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,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-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

□ 가점 및 감점사항

○ **(가점)**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5점까지 우대

분야	우대사항	가점	확인방법 (증빙서류)
사업 특화 (최대 5점)	시장·상점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확약한 지방비가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% 이상인 경우	5점	지방비 지원 확약서
	시장·상점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확약한 지방비가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5% 이상인 경우	3점	지방비 지원 확약서

*** 대면평가 당일까지 발급 및 제출 된 증빙에 한하여 인정**

○ (감점)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

연번	감점 사항	감점	확인
①	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	10점	전문기관 확인
②	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 2.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	1점	

4. 신청기간 · 방법 등

□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

○ 신청·접수기간: 2022년 3월 31일(목)~5월 4일(수), 18:00까지

◇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

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 까지

□ (신청방법)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iris.go.kr)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· 접수

☞ 신청방법 : **www.iris.go.kr**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R&D업무포털 → 과제접수 → 사업세부 공고 목록 → 해당 정부부처(중소벤처기업부),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검색 → 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·상점가 R&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→ 접수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

* [붙임2] '접수시스템 사용 안내서' 참고

○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1단계	2단계	3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	최종 확인 및 제출

① 1단계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**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(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 후 연구자 등록 및 기관 등록 필요)

② 2단계: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단계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www.iris.go.kr)**에 각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

③ 3단계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(신청·접수 완료)
  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)

☞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하므로, "최종확인"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"제출"
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불가

☞ **접수 마감시간(종료일 18:00시)까지 "제출" 완료된 과제까지 접수되며, 마감 이후 접수 불가**

□ (제출서류) ※ 별첨 파일 참조

연번	서 식 명		제출서류	
			필수	해당시
①	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*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22. 6. 1.로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 ** (본문2)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	본문1	O	
		본문2	O	
②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	O	
③	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		O	
④	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O	
⑤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	O	
⑥	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납부 계획서		O	
⑦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서			O
⑧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. 단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		O	
⑨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*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('21년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를 제출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('20년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 제출		O	
⑩	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(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)		O	
⑪	전통시장·상점가 동의서		O	
⑫	지방비 지원 확약서			O
⑬	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			O
⑭	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			O
⑮	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			O
⑯	연구시설·장비 심의 요청서 *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			O

5. 지원기준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

* 코로나-19로 인한 중소기업 R&D 부담완화 정책(중기부 고시 제2020-104호, '20. 12. 21.)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%이상 → 20%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: 총 연구개발비의 80%*이내에서 최대 2년, 20억 원** 이내

*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과제 신청 시, [과제접수]-[과제정보]-[연구기관]-[연차별 참여기간]-[규정 적용 예외 사유]에서 코로나19를 체크해야 80% 적용 가능

** 연차별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

○ 기관부담연구개발비: 총 연구개발비의 20%이상*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

*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<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>

(단위: 천 원, %)

구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총사업비
		현금	현물	합계	
1차년도('22년)	750,000	18,750	168,750	187,500	937,500
2차년도('23년)	833,000	20,825	187,425	208,250	1,041,250
3차년도('24년)	417,000	10,425	93,825	104,250	521,250
합계	**2,000,000**	**50,000**	**450,000**	**500,000**	**2,500,000**
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(%)	**80%**	**-**	**-**	**20%**	**100%**

* 연구개발 기간 2년(24개월)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억 원 지원 기준

**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(50백만 원)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(500백만 원)의 10%

□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기준

○ **(신규채용 인건비)**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*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

* 채용일부터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

○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 원 이상인 경우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 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

* 예시)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

-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(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), 과제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%를 유지

*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%씩 동시 참가는 가능

**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
- (신규채용 시점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각 연차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

*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,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

○ 실적점검

- (협약시)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**<u>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</u>**에 참여연구원 등록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

*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
- (위반시)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*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(旣 지급 인건비 포함)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

*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

□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

○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

*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,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

** 예시)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

*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,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

- (적용 대상)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

-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,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

*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

*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

- 신규채용 기준

구 분	기 준
신규과제	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
- (현금부담 감액 범위)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

*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

○ 실적점검

- (협약시)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**에 참여연구원 등록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

*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
- (요건 미충족시)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

6. 기술료 징수 기준

□ R&D 기술료 징수기준

○ **(납부대상)** 최종평가 "완료"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
○ **(납부방식)**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
◇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
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
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
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>> 고객지원 >> 이용매뉴얼 >> 시스템 이용매뉴얼 >> 8. 기술료 참고

○ **(기술료 감면)**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,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% 만큼 감면

- (대상기업)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,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

- (신청조건) 정부 R&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*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

*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

※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: 기술실시계약 체결일(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)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, 기술실시계약 체결일(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)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

7. 추진근거 및 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

○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
○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
○ 스마트 전통시장·상점가 R&D 지원사업 관리지침

* 세부사업 관리지침은 제정 중으로, 과제 선정 및 협약 시 제정 된 지침 안내 예정

○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
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

□ 추진체계

< 사업추진 체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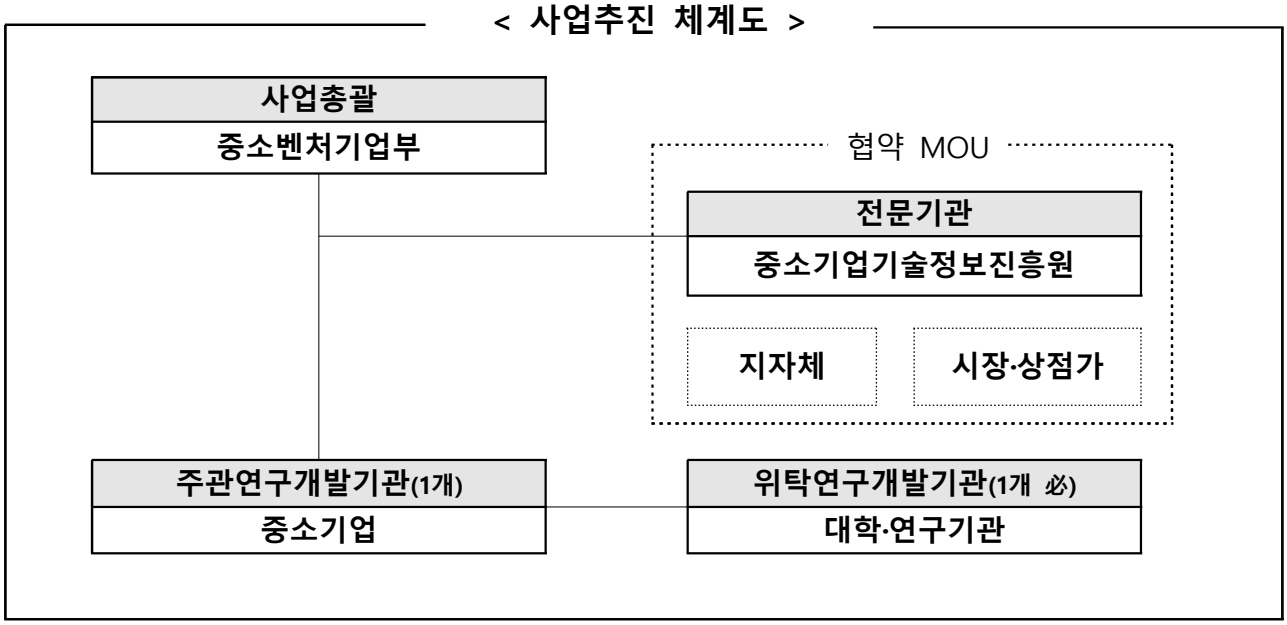

8.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	시행계획 공고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02-2280-0405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수도권업무지원실)	신청・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	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		접수시스템	1877-2041 (IRIS 상 Q&A메뉴 활용)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: https://iris.go.kr
- ○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: http://www.smtech.go.kr
- ○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: http://www.mss.go.kr
- ○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lIfqd

[붙임1]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
[붙임2] 접수시스템 사용 안내서